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1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최기상 · 맹성규 · 장종태
김영환 · 이상식 · 이주희
김재원 · 김승원 · 이정문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주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주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주거”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주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의료”를 각각 “보건의료·주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한
사항과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
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데이터처장”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 <u>보건의료</u>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보건의료·주거</u> ----- ----- ----- -----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u>보건의료</u> ·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보건의료·주거</u> ----- ----- -----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u>보건의료</u> ·교육·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u>보건의료·</u>

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보건의료·주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보건의료·주거-----

-----.

1. 빈곤아동의 복지 · 보건의료
· 교육 · 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생략)

<신 설>

<신 설>

1. -----보건
의료·주거-----

2. ~ 4.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2. 3. (생략)

③ (생략)

④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한 사항과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7명-----

② -----.

1. -----

-----기획예산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데이터처장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